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8년 11월 24일
- 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3일
- 라. 상정일자 : 제82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
-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11월 22일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오용수)

가. 개정 사유

-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「정원관리기관별규정제」가 개정됨에 따라
- 행정자치부터 시달된 기구·정원관련 조례·규칙 통합정비지침에 의거 자치단체 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- 정원관리기관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(종전) 4개기관(구본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, 동)
⇒ (개정) 2개기관(집행기관, 의회사무기구)으로 통합
- 집행기관의 정원 “567명”을 “568명”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“19명”을 “18명”으로 함.
- ‘98년 조직개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초과 현원에 대해 1999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규정을 신설(부칙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재천)

-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정원관리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음.
- 기존 구본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, 동 4개기관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통합함으로써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갖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원관리에 있음.
-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정원의 인력 4명 감축 계획(1998~2000년)의 시기를 안분 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능직 정원1명을 감축하고 구본청에 증원 되도록하는 개정 조례 안으로 심도있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임.

4. 관련 법 규

- 지방자치법제103조
- 행정기구와 정원관리규정제21조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9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86명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68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8명

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 구분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,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